

발 간 등 록 번 호

G000L91-2018-111



# 2018년 12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목 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b>제1장</b> 총칙 .....	9
<b>제2장</b>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10
<b>제3장</b>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	13
<b>제4장</b> 보칙 .....	14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16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	19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5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31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	39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	40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	41
(별지 제4호 서식)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	42
(별지 제5호 서식)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안내문 .....	43
(별지 제6호 서식)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 .....	44
(별지 제7호 서식) 재활치료계획서 .....	45
(별지 제8호 서식) 재활심리상담(개인) 결과서 .....	46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보험 재가적응훈련계획 및 동의서 .....	47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	5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	52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 항목에 대한 알림 .....	54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	5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	65
-------------------------------	----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81
제1절 치과보철 .....	81
제2절 재활보조기구 .....	84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	95
제12절 치료보조기구 .....	96
제15절 재활치료료 .....	97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	101



# 목 차



## 응급의료수가기준

응급의료수가기준 .....	113
(별표 1)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7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118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 .....	12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장 총칙 .....	123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	126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	146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	151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	156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182
제7장 보칙 .....	190
제8장 벌칙 .....	204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20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217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237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 .....	244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	245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	246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	25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	253
(별지 제1호 서식)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	254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	255
(별지 제3호 서식) 영치증 .....	256
(별지 제3호의2 서식) 외출·외박 기록표 .....	257
(별지 제4호 서식) 범칙자 적발 보고서 .....	258
(별책)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	259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정	1999. 9. 8.	고시	제1999-274호
개정	2013. 6. 28.	고시	제2013-391호
	2014. 8. 28.	고시	제2014-513호
	2015. 6. 1.	고시	제2015-356호
	2016. 6. 27.	고시	제2016-418호
	2017. 12. 26.	고시	제2017-990호
	2018. 10. 1.	고시	제2018-59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말미암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병(傷病 : 부상으로 인한 제 증상을 말한다)을 진료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6. “보험회사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
  -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사업자”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 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또는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2. 제1호의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3.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4.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진료비의 납입을 청구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는 경우

##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4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내역 및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기준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정범위(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와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에 의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3호는 제외한다.

③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된 항목이 건강보험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따른다.

⑤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범재활치료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1. 사고 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 중인 환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2. 사고 후 2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전문재활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를 받은 환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인정범위의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그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비. 다만, 해당 자동차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합병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에 대한 진료비.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해당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다.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함.

4. 교통사고환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퇴원 또는 전원(轉院)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그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입원함으로써 인하여 증가된 진료비. 다만,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라 통원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교통사고환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 중 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삭제>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 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4호 및 제5호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건강보험기준 중 상대가치점수, 금액이 정해진 행위·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장애인보장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3.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항목 및 제5조제5항에서 정한 항목에 대

해서는 그 항목의 점수 및 금액

4. 제1호 및 제3호에서 비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금액
5.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정범위 중 금액으로 정한 항목은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도로 가산을 인정하는 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개별 의료기관이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 또는 실제 구입금액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

###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및 제6조의3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②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에는 그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명이 없거나, 소명된 내용·근거 및 진료비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의 진료비는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진료비
  2. 별표 1에 명시된 진료항목(종별가산율 및 입원료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비중 건강보험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

제10조(진료기록의 확인청구) ① 보험회사등은 진료수가 지급을 위하여 관계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의 확

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확인청구 내용이 진료에 관한 사실확인 및 진료수가 지급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은 관계 진료기록의 일부만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1조 <삭제>

## 제4장 보칙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사고환자에게 퇴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보증증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의 통지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
3. 법 제14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그 확인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의사표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심사청구 당사자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결정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
  7. 법 제22조에 따라 심의회 관계자에 대한 의견 등의 수집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따라 통지 등을 행한 경우에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키-3 수면 다원 검사, 오-6 기타 행동치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분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p>[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목은 45%</li> <li>2. 나목은 37%</li> <li>3. 다목은 21%</li> <li>4. 라목은 15%</li> </ol>
제1장 기본진료료	<p>[입원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을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입원 151일째부터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li> <li>2. 종합병원의 입원료(가-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한다.</li> <li>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가-2, 가-9가~다)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 입원료의 병원관리료는 키-1-사 특정 병원관리료 (VA017, 90017)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은 2018.7.1.부터 2018.12.31.까지 진료분에 한한다.</li> </ol>
제5장 주사료	<p>[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수액제 주입료를 통한 주사(마-5-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한다.</p>
제7장 이학요법료	<p>[이학요법료]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는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p>



대분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p>[처치 및 수술료 등] 안면 또는 경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산정한다.(키-9, VI010)</p> <p>[처치 및 수술료 등]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자-24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는 다음의 키-10 반흔구축성형술, 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로 산정한다.</p> <p>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p> <p>가. 안면(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VI021)  (2) 종합병원 80,000원(VI022)  (3) 병원 70,000원(VI023)  (4) 의원 60,000원(VI024)</p> <p>나. 기타부위(cm당)  (1) 상급종합병원 70,000원(VI031)  (2) 종합병원 60,000원(VI032)  (3) 병원 50,000원(VI033)  (4) 의원 40,000원(VI034)</p> <p>키-1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Autogenous Fat Graft or Dermo-Fat Graft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이식한 부위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p> <p>가. 4cm<sup>2</sup> 미만 511,800원(VI041)  나. 4cm<sup>2</sup> 이상~16cm<sup>2</sup> 미만 716,520원(VI042)  다. 16cm<sup>2</sup> 이상~36cm<sup>2</sup> 미만 921,240원(VI043)  라. 36cm<sup>2</sup> 이상~100cm<sup>2</sup>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cm<sup>2</sup> 이상 2,047,200원(VI045)</p>

대분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p>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p> <p>응급의료기준</p>	<p>키-14 레이저 반흔성형술                      주: 2부위 이상 시술시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가. 0~25cm<sup>2</sup> 미만 153,540원(VI071)                      나. 25cm<sup>2</sup> 이상~100cm<sup>2</sup> 미만 255,900원(VI072)                      다. 100cm<sup>2</sup> 이상 358,260원(VI073)</p> <p>[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p> <p>[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수가기준」의 2.산정기준 “가”항에 의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등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p>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 입 원 료 ]		
카-1		상급병실료		실제소요 비용 (기본입원 료와의 차액)
	VA011 (90011)	가. 1인실		
	VA012 (90012)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VA013 (90013)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		
		[ 검 사 료 ]		
노-371	CZ371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누-532나(1)의 소정점수에 6,140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노-671	FZ671	후각기능검사 가. 인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역치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30,710 40,940
노-697	FZ697	단섬유근전도 가. 상급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 병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라. 의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50,000 47,000 43,000 41,000
노-731	FZ731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주 :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30,710
노-732	FZ732	회전검사 Rotatory Chair Test	2,444.0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노-733	FZ733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9'로 기재)		
노-775	EZ775	관절계를 이용한 무릎관절인대검사		20,470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주 :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		
	VB021~ VB024 (91021~ 91024)			
	VB011 (91011)	가. 상급종합병원		117,510
	VB012 (91012)	나. 종합병원		95,710
	VB013 (91013)	다. 병원		92,120
	VB014 (91014)	라. 의원		92,120
키-3		수면 다원 검사 주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29 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검사항목, 시설기준, 실시 인력기준, 인정횟수)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나-629 수면다원검사로 산정한다. 2. 교통사고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나-629, 키-3)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VB051	(1) 상급종합병원		350,000
	VB052	(2) 종합병원		330,000
	VB053	(3) 병원		300,000
	VB054	(4) 의원		280,00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키-4		음경기능진단 주 : 수면중 발기검사, 시청각 성자극 발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가. 주간 (1) 상급종합병원 VB071 (2) 종합병원 VB072 (3) 병원 VB073 (4) 의원 VB074 나. 야간 VB081 (1) 상급종합병원 VB082 (2) 종합병원 VB083 (3) 병원 VB084 (4) 의원		80,000 75,000 69,000 65,000  100,000 94,000 86,000 82,000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키-5		X-Ray 필름 복사(매당)		
		VC011	가. 상급종합병원		4,000
		VC012	나. 종합병원		3,700
		VC013	다. 병원		3,400
		VC014	라. 의원		3,200
	키-24	VC040	영상진단 저장매체 복사수수료(개당) 주 : 1. CD 등 저장매체 종류에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2.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진료상 필요하여 복사한 경우 산정한다.		10,000
			[ 이학요법료 ]		
	소-2	MZ002	기립경사훈련		4,910
			[ 정신요법료 ]		
	오-5	NZ005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102,36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 Behavioral Therapies 주: 전문의 또는 전문의 지도하에 3년차 이상 전공의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아-6가. 인지행동치료-개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NZ008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20,470
	NZ009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20,470
	NZ010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20,470
		[ 처치 및 수술료 ]		
조-83	SZ083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용” 중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키-12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VI051	가. 소 주 :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047,200
	VI052	나. 중 주 : 양쪽(4군데 이하)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354,280
	VI053	다. 대 주 : 5군데 이상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2,866,080
키-13		용비술 Augmentation		
	VI061	가. 소 주 : 인공이식만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023,600
	VI062	나. 중 주 : 인공이식과 자가조직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535,400
	VI063	다. 대 주 : 연골이나 자가조직이식과 더불어 비첨부성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047,200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카-15	VI080	조직확장기 삽입술 주 : 1. 소정금액에는 조직확장기 삽입술 및 확장유도술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용된 조직확장기는 별도 산정한다.		1,023,600
카-23	VI094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주 : 500모 미만 시술시 1모당 2,500원을 산정한다.		
	VI091	가. 500모 ~ 1,000모 미만		2,400,000
	VI092	나. 1,000모 ~ 2,000모 미만		4,500,000
	VI093	다. 2,000모 이상		6,600,000
		[ 치과 처치·수술료 ]		
카-26	VJ010	완전도재전장관 All Ceramic Crown 주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1절 [치과 보철료] 중 '카-3 도재전장구조관(귀금속)'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진료원칙] 및 [보철원칙]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초-5	UZ00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진[1치당]*	1,712.61	
초-42	UZ042	교합안정장치	8,555.92	
		[ 한방 투약 및 조제료 ]		
바-1	13010	한방 첩약(1첩당) 주 :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6,690
바-2	13020	한방 탕전료(1첩당)		670
카-100		한방 관련 의약품 주 :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실구입가
	92011	가. 복합엑스제		
	92012	나. 한방파스		

※ (19.1.1) 초-5 자보수가 삭제\_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의거 건강보험 급여전환 관련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하-1	93011	약침술	97.47	
	93013	주 : 1.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93012	2.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하-2	93021	추나요법 [1일당]	149.16	
	93022	주 :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기 타 ]				
키-16	VM010	Bobath sling		30,710
키-17	VM020	Shoe strap(foot plate)		23,030
키-18	VM030	Shoe elevation		23,540
키-19	VM040	Safety Walking Belt		51,180
키-20		사후처치		
	VM051 (97011)	가. 상급종합병원		20,000
	VM052 (97012)	나. 종합병원		18,000
	VM053 (97013)	다. 병원, 한방병원		17,000
	VM054 (97014)	라. 의원, 한의원		16,000
키-21		슬링 sling		실구입가
	VM061	가. 팔걸이 arm sling		
	VM062	나. 쇄골밴드, 8자형 밴드		
키-22	VM070	캐스트 신발 cast or splint shoe		실구입가

주: 행위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제3항 관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1	일반사항	진료수가(행위)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수가(행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목록에 등재(고시)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함.</li> <li>2. 건강보험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li> </ol>
2		진료수가(약제)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는 약사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함.</li> <li>2. 이 경우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약제를 우선 인정하고, 등재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가능한 약제로서 등재된 약제 중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li> </ol>
3		진료수가 (치료재료)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약사법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li> <li>2.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하고,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li> <li>3.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환자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li> </ol>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4		진료수가 (신의료기술 등)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신의료기술 등)를 자동차사고환자에게 시행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서가 접수된 행위·치료재료로서, 건강보험기준 중 대체 가능한 행위·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함.</li> <li>2.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가격(행위는 실제비용, 치료재료는 실구입가)을 기재한 비용산정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li> </ol>
5		건강보험기준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 에 대한 인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5조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기준 중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6	<삭제>	<삭제>	<삭제>
7	입원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중 합병원의 2~3인 실 산정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원당 상급병실료(기본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률에 따른 금액 포함)를 산정하되,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병실의 사용이 부득이한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필요한 병실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8		건강보험(의료급 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 거 진료를 받고 있 던 환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 제 적용방법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일로부터 적용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9	의약품 관리료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또는 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소정점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10	이학 요법료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할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함. 다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인원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 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
11	한방 물리요법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원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12	입원료 및 식대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1.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함. 2.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여야 함.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가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퇴원 또는 전원 소견을 보험회사등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3호 서식)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퇴원 및 전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li> <li>-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서 통지된 퇴원 또는 전원 가능 소견서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li> <li>- 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 또는 전원 가능소견을 통지 받고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기 전까지의 입원료와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원료는 인정하여야 함.</li> </ul> <p>3.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료는 산정가능하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병원관리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산정방법과 동일함. 또한 입원중인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 외출, 외박일 이후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p>
13	진료수가 제외대상	진료비 처리방법	<p>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및 교통사고환자가 해당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진료비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됨'을 서면으로 안내(별지 제5호 서식)</li> <li>- 의료기관은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비 구분하여 청구</li> <li>- 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진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를 인정함</li> </ul>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14	처치 및 수술료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 시술시 수가 산정방법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제5조)내에서 모든 수술료에 대하여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또는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또는 금액)의 50%,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수술 소정점수(또는 금액)의 70%를 산정함. 다만, 주된 수술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또는 금액)만 산정함
15	요양병원	기왕증이 있는 자동차 사고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시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및 기왕증 비용 산정 방법	1.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 (1) 기왕증이 악화된 상태를 반영하여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산정 (2) 기왕증에 대한 비용은 환자분류군별 정액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별도 산정 불가 2. 기왕증이 악화되지 않은 경우 (1) 기왕증이 환자분류군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기왕증을 제외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상태로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산정 - 환자분류군별 정액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왕증 비용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청구 가능 (2) 기왕증이 환자분류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기왕증을 포함하여 환자분류군별 정액수가 산정 - 기왕증에 대한 비용은 환자분류군별 정액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별도 산정 불가
16	치아보철	치아보철비 산정기준	치아보철비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17	시범재활 치료	대상자 선정절차	1. 제5조제5항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시범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시범재활치료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지급의사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에게 제출한다.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은 의료재활시설이 심사기관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연번	항목	제목	세부 인정 사항
			<p>청구한 경우 해당 환자가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임을 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p> <p>3. 시범재활치료 대상자의 시범재활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시범재활치료계획 및 환자동의서'에 현재의 환자 상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및 연장 기간 등을 기재하여 시범재활치료 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까지 보험회사등에게 제출한다.</p>
18	시범재활치료	재가적응훈련관 대상자 선정절차	<p>1. 제5조제5항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대해 설명한 후 '자동차보험 재가적응훈련계획 및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7일 이내에 지급의사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에게 제출한다.</p> <p>2. 재가적응훈련 대상자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은 의료재활시설이 심사기관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해당 환자가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 대상자임을 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p>
19	입원환자 식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기준	<p>1.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그 외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 및 현황 통보 기준은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한다.</p>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p>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p> <p>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하되, 팀 회의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p> <p>3.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하며, 최초 팀회의는 전문재활치료 시작 이후 2주 이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p>	
91501	가. 최초	24,320
91502	나. 2회째부터	16,210
91503	<p>특수재활입원료[1일당]</p> <p>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를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7일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p> <p>2.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사-125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 「자동차보험진료수기에 관한 기준」 [별표4] 1. (3)이하요법료 재활로봇 보행치료(91212)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p> <p>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키-1 상급병실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p>	192,000

(2) 검사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p>주 : 1. 상근하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뇌졸중상지기능평가, 연하장애임상평가는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뇌졸중상지기능평가, 연하장애임상평가에 한함)가 해당검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평가)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p>	
91107	<p>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Muscle strength test using pneumatic instrument</p> <p>주 : 1.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근골격계질환 손상 및 수술후 근육의 약화와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근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공압식측정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같은 날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 하지, 척추 3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한다</p> <p>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나-661 도수근력검사 또는 너-775 등속성 운동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p>	4,610
91108	<p>10미터 걷는 동안 속도검사 10-meter timed walking test</p> <p>주 : 1. 뇌손상 또는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5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p> <p>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p> <p>3. 같은날 척수손상 보행평가(WISCI)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p>	3,270
91109	<p>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p> <p>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p>	9,830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1. 뇌손상 환자의 조기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양측) 표준화된 평가 도구(MFT)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13,120
91111	연하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iculty 주 : 1.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기능 신체사정 및 연하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2회 이내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4회 이내만 산정한다.	6,560
91112	균형평가 Berg's Balance Scale(BBS) 주 : 1. 뇌손상 환자의 균형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20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 (K-BBS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할 경우 2회 이내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4회 이내만 산정한다.	13,12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수중운동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운동처방실에서 물리치료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의사가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산정한다.	33,550

## (3) 이학요법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91202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주 : 1. 의사, 재활간호사(전문재활치료팀 구성원으로서 팀 회의에 참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공간(면적 : 82.645㎡ 이상)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환자에게 40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운동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3.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6,490
91203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주 : 1.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중 사회사업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2인 이상의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2회 이내로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로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6,790
91211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20~40분 이상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재활치료 동기부여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심리상담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월 1회만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3회 이내만 산정한다.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7,530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212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주 : 재활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운동장애 (뇌손상,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66,260
91213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주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장애인용 운전재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능력 및 운동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30분 이상 훈련을 시행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22,590
91214	앉은자세 평가 및 훈련 Sitting Position Evaluation and Education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32,510

(4) 수중운동치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주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수중운동치료는 수중운동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물리치료사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수중에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91402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주 : 1. 중추신경계손상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보행이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7,040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91403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 주 : 1. 근육과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 근육이완, 근력강화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1인의 물리치료사가 2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제3절 사-121 풀치료 또는 집단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27,260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적용하는 건강보험기준 완화 항목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가-2	입원료 (Inpatient Care)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나-610가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신경계 질환에만 월 2회 이내 산정하되, 정신기능, 뇌신경운동기능, 지각기능, 반사자율신경계 및 자세, 보행, 실화 등을 순서로 전 신체 신경부위에 대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산정
나-661	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월 2회 이내 산정
너-771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1. 월 2회 이내 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 구(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너-772	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al Test)	1. 월 2회이내 산정 2. 짬스수부평가검사와 오코너 핑거 텍스트리티검사는 검사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 3. 양측은 별도 산정(병변이 있는 경우)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 (Range of Motion Test)	1. 월 2회 이내 산정 2. 같은날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 하지, 수부 3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되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 각각 산정
사-105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1. 상지·하지 관련 상병으로 인한 관절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수기로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사-106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16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척성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전산화된 정량적 평가결과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등척성 운동치료'로 산정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인정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행풀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li> <li>2. 같은 날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금액만 산정</li> </ol>
사-128-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3회이내만 산정</li> <li>2. 같은날 집단상담 또는 재활심리상담-개인을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li> </ol>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 8. 28.)

지급보증 중지번호 :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수 신 : ○○병(의)원장 귀하

제 목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 환자는 우리 회사(조합)와 합의가 성립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환자 성명	(남 여)
환자 생년월일	
지급보증번호	
지급보증 중지일자	20   년   월   일
특이사항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센터장 (인)

주소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 8. 28.>

<p>문서번호 :</p> <h2 style="text-align: center;">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h2>													
<p>수 신 : ○○보험 주식회사 (공제조합) ○○ 보상팀장(보상사무소장) 귀하</p> <p>주 소 :</p>													
<p>제 목 : 교통사고 입원환자 퇴원 가능 소견서 제출</p>													
<p>1. 귀 사(조합)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지급보증한 교통사고입원환자에 대하여 진료한 결과, 의학적인 판단상 우리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2.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귀 사(조합)가 이 통지를 받은 이후 별도의 지급보증 중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입원진료비는 지급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하겠으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가. 환 자 명 :</p> <p>나. 환자 생년월일: (남, 여)</p> <p>다. 주요 진단명 :</p> <p>라.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한 소견 : (“치료종료”, “통원”, “타의료기관으로의 전원입원” 중 하나를 기재)</p> <p>마. 특기사항 : (환자의 퇴원가능 사유, 현 증상 및 상태, 향후 치료내용, 형태 등을 기술) 끝.</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치의 : ○○○ (면허번호 : ) (서명) ○○ 병(의)원 원장 ○○○ (인)</p> <p>주소 :</p>													
도달 증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1. 직접전달, 팩스전송</td> <td style="width: 20%;">수령일시</td> <td style="width: 20%;">수령인명</td> <td style="width: 30%;">수령인서명</td> </tr> <tr> <td>2. 등기우편</td> <td colspan="3">등기번호 :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td> </tr> <tr> <td>3. 내용증명</td> <td colspan="3">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td> </tr> </table>	1. 직접전달, 팩스전송	수령일시	수령인명	수령인서명	2. 등기우편	등기번호 :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3.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1. 직접전달, 팩스전송	수령일시	수령인명	수령인서명										
2. 등기우편	등기번호 :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3.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p>※ 비 고 : 동 서식은 2매 1조로 작성하여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보험회사 등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 청구시 제출합니다.</p>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 8. 28.>

문서번호 : <h2 style="margin: 0;">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h2>							
수 신 : ○○ 병(의)원장 귀하 주 소 : 제 목 : 입원(식대 포함)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불가) 통보서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의료기관에 입원한 다음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이전 진료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아 통원진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던 바 우리 회사(조합)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그 지급을 보증하고 다만,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환 자 명 : 환자 생년월일 : (남, 여)  20 년 월 일  ○○보험주식회사 ○○ 센터장 (인)  주소 :							
도 달 증 명	1. 직접전달, 팩스전송	수령일시		수령인명		수령인서명	
	2. 등기우편	등기번호: ○○ 우체국 20 년 월 일 제 호					
	3.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증명인으로 대체					
※ 비 고 : 동 서식은 2매 1조로 작성하여 1부는 보험회사등이 보관하고 1부는 의료기관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등 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내역 통보를 받으면 2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4. 8. 28.>

##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안내문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리되는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다 음 -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기존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관련규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손해보험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담당자: ○○ 화재(공제), ○○○, 전화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 8. 28.>

재활심리상담(개인) 결과서					
환자번호		진 료 과			
성 명		연령 / 성별		결혼	
사고일자			평가일자		
진 단 명				주 치 의	
평가방법					
상담내용 (개인 /가족)	※ 환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치료 기법 중 환자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문제와 갈등의 원인, 해결을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하되, 치료 동기,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상태, 대인 관계, 가족 관계 및 직업 복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상담 후 작성				
상담결과					
자격종별 :		자격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자동차운영과-3446호, '14.9.2.)

▣ 상급병실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 '14.9.1. 진료분부터 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교통사고환자가 4인실, 5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건강보험에서 정한 입원료 수가(4인실, 5인실, 기본입원료) 및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2	'카-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방법	<p>「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이 경우 자동차보험은 환자부담금이 없으므로 상급병실료를 산정하되,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급종합병원 1인실 산정방법 → 기본입원료 + 상급병실료 1인실(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VA011, 90011)</li> </ul>						
3	교통사고환자가 요양병원의 4·5인실에 입원할 경우 비용 산정방법	<p>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의 4·5인실은 상급병실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원료와 상급병실료를 산정함. 이 경우에도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산정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병원의 상급병실료 4·5인실 코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코드</th> <th>분류</th> </tr> </thead> <tbody> <tr> <td>VA014(90014)</td> <td>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td> </tr> <tr> <td>VA015(90015)</td> <td>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td> </tr> </tbody> </table>	코드	분류	VA014(90014)	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	VA015(90015)	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
코드	분류							
VA014(90014)	상급병실료 4인실(요양병원)							
VA015(90015)	상급병실료 5인실(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4737호, '17.8.31.)

1.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허-2-1		한방물리요법  주: 1.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경피전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경추견인, 골반견인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4. 추나요법(허-2 93021~93022),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1일 2종 이상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1종만 산정한다.		
	93023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1일당]	20.37	
	93026	나. 경피전자극요법(TENS)	45.93	
	93027	다.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45.93	
	93028	라. 경추견인	82.76	
	93029	마. 골반견인	80.48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하-2-1	93030	바. 도인운동요법 [1일당]  주: 1.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138.84	
	93031	2.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93032	사.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  주: 1. 근육손상 등으로 발생한 통증이나 장애에 대하여 해당 압통점, 경혈, 경근을 대상으로 마사지요법 등을 해당 부위에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0.38	
	93033	2.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의 4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하-70-1		온냉경락요법		
	93024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주. 같은날 하-2-1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4장 하-70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93025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주. 같은날 하-2-1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4장 하-70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구분기입의 행정처리

2. 상기 사항은 2017년 0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 기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 (자동차운영과 -3554호, '15.9.8.)은 2017년 09월 11일부터 동 규정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끝.

○ ‘신경인지기능검사’ 건강보험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 항목에 대한 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5375호, '17.9.29.)

(자동차운영보험과-41호, '18.1.3)

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검사인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를 고시 제2017-167 호에 따라 '17.10.1.일부로 분류체계를 유형별로 변경하고 일부 검사를 급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급여·비급여 항목)’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4항 및 제8조1항4호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로 산정하고
3.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수가 코드는 삭제 후 아래와 같이 **비급여 유형별 세부검사항목 코드**를 신설함을 알려드리오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심사·지급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형 I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경계력검사[시각]	VA01
	Number-Letter-Sequencing	VA02
	글자듣기에 의한 주의력검사	VA03
	Spatial Memory Span (공간기억력검사,공간따라잡기)	VA04
나. 기억력 검사	Sentence repetition	VA05
	MFFT(Matching Familiar Figure Test)	VA06
	Spatial Memory Span (공간기억력검사,공간따라잡기)	VA07
	비엔나system-Corsi 단기기억력검사(CORSI)	VA08
	비엔나system-시각재인검사(FVW)	VA09
다. 언어능력 검사	의미모양-색깔 속성검사/이름대기 검사	VA10
	성인진단적 언어능력 검사	VA11
	성인진단적 이해력 검사	VA12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인식력검사[청각]	VA13
	선나누기검사	VA14
	Facial recognition test(단축형)	VA15
	보고 그리기	VA16
	선그리기	VA17
	Visual scanning	VA18
	그림완성	VA19
	인지기능평가	VA20
	알버트 평가검사	VA21
마. 감각-운동 협응검사	페그보드검사	VA22
	손가락 두드리기 검사	VA23
	Tracking test(원추적검사)	VA24
	CNT-수지력검사(Finger Tapping)	VA25
	비엔나system-시각변별력검사(FLIM)	VA26
	반응결정력검사(RG)	VA27
	운동결정력검사(DG)	VA28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비엔나system-보속성 검사(PERSEV)	VA29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촉각형태지각검사	VA30
	오류발견검사	VA31

부록 II 인지평가항목

2) 유형II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연속수행력검사[시각]	VB01
	연속수행력검사[청각]	VB02
	CNT-시각지속검사(Visual CPT)	VB03
	CNT-조건시각지속검사(Visual CCPT)	VB04
	CNT-언어지속검사(Auditory CPT)	VB05
	CNT-조건언어지속검사(Auditory CCPT)	VB06
	CNT-숫자따라말하기검사(Digit span)	VB07
	비엔나system-신호탐지검사(SIGNAL)	VB08
	비엔나system-경계심검사(VIGIL)	VB09
	나. 기억력 검사	CNT-시각단기기억검사(Visual span)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다. 언어능력 검사	문장이해력검사(SCHT)	VB11
	그림어휘력검사	VB12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구성능력검사	VB13
	인식력검사[시각]	VB14
	후퍼 시각조직화검사	VB15
	같은 그림 찾기	VB16
	미네소타공간관계지각력검사	VB17
	토막짜기	VB18
	선각도 판정검사(선지남력판단검사)	VB19
	Facial recognition test	VB20
	Dichotic listening	VB21
	비엔나system-인식력검사(COG)	VB22
	마. 감각·운동 협응검사	약력측정검사(Grip strength test)
반응시간검사[시각]		VB24
반응시간검사[청각]		VB25
시청각-운동 협응검사		VB26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단축형)		VB27
CNT-Modality Shift Effect Test		VB28
CNT-Cross-over Test		VB29
비엔나system-시청각자극반응검사 (CROSS)		VB30
비엔나system-운동수행력검사(MLS)		VB31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논리적 사고력 검사	VB32
	CNT-선로잇기검사(Trail Making)	VB33
	CNT-단어색채검사(Word-color test)	VB34
	CNT-개념형성검사(Hypothesis Formation)	VB35
	비엔나system-가설형성검사(HYPO)	VB36
	비엔나system-작업수행력검사(ALS)	VB37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추상적사고력검사	VB38



3) 유형Ⅲ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TOVA	VC01	
	비엔나system-지속적주의력검사(DAUF)	VC02	
나. 기억력 검사	이야기회상 검사	VC03	
	단기기억력검사[시각]	VC04	
	단기기억력검사[청각]	VC05	
	시각 학습 검사	VC06	
	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VC07	
	자서전적 기억평가면접	VC08	
	Visual retention test	VC09	
	Logical memory test(논리기억력검사)	VC10	
	Rey(Auditory) verbal learning Test	VC11	
	CNT-시각기억검사(Visual Learning)	VC12	
	다. 언어능력 검사	토큰검사	VC13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VC14
시지각 발달검사(DTVP)		VC15	
시지각 기능검사(K-TVPS)		VC16	
마. 감각·운동 협응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C17	
	Motor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MABC)	VC18	
	비엔나system-3차원동화상추적검사(3PTR)	VC19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카테고리검사	VC20	
	레이븐 매트릭스검사	VC21	
	비언어적 지능검사	VC22	
	CNT-카드분류검사(Card Sorting Test)	VC23	
	CNT-SPM-CPM	VC24	
	비엔나system-표준도형지능검사,II (SPM, CPM)	VC25	
사.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Delirium Rating Scale	VC26	

4) 유형Ⅳ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가. 각성도 및 주의력 검사	무시증후군 검사-총집	VD01
나. 기억력 검사	캘리포니아 언어학습검사	VD02
	홉킨스 언어학습검사	VD03
	Rey-Kim 기억검사	VD04
	MAS(Memory Assessment Scale)	VD05
	List learning & recall(단어항목학습, 단어항목회상)	VD06
	단어목록기억·회상·재인검사	VD07
	Verbal memory test(언어기억력검사)	VD08
	CNT-언어기억검사(Verbal Learning)	VD09
	다. 언어능력 검사	어휘력 검사
Peabody 어휘선별검사		VD11
라. 지각 및 시공간 능력검사	무시증후군 검사-총집	VD12
마. 감각-운동 협응검사	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test	VD13
	Peabody Developmental Motor Scales	VD14

5) 유형Ⅴ

인지평가영역	항 목	세부검사항목 특정내역 코드
나. 기억력 검사	웍슬러 기억 평정척도	VE01
바.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라이어터검사(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VE02

※ 세부검사항목 코드는 청구서 출단위(JT023) 특정내역에 기재

3. 상기 사항은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끝



##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자동차운영보험과-5916호, '17.10.31.)

1.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2인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을 '17.5.30.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2인 의사 입원진단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안내('17.5.30)

2.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시범사업의 경우 진료수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3. 동 시범사업은 타 시범사업과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 관련 입원 시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해당 수가 적용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에서도 동 시범 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방문의사의 면허번호 기재를 위해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를 신설하고,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붙임]

##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범사업 수가 세부 작성요령

### 가. 청구원칙

- (1)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치료입원확인 시범사업 수가 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 (2)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를 합하여 작성  
 ※ 단, 사업시작일(5.30)일 이전 당월요양 개시일 명세서는 ‘치료입원확인료’ 및 ‘치료입원확인 관리료’에 변경일을 기재
-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특정내역구분 코드 신설 및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별표5)의 2. 진료내역 줄번호 (확장번호)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란을 신설하여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명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1)/9(6)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기재 한다. <면허종류> 1:의사

- (4) [특정내역 기재] ‘치료입원확인료’를 산정하는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위탁진료)에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기재한다.
- (5)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따른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항목	세부작성요령																											
치료입원 확인료	<p>□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며, ‘치료입원확인료’는 특정내역란에 면허종류/면허번호,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예시) 치료입원확인 필요 환자가 발생한 의원에서 종합병원에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한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출</th> <th>항</th> <th>목</th> <th>코드 구분</th> <th>코드</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022</td> <td>01</td> <td>03</td> <td>1</td> <td>IA921</td> <td>64,930</td> <td>1</td> <td>1</td> <td>64,930</td> </tr> <tr> <td>0023</td> <td>01</td> <td>03</td> <td>1</td> <td>IA940</td> <td>5,120</td> <td>1</td> <td>1</td> <td>5,120</td> </tr> </tbody> </table>	출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01	03	1	IA921	64,930	1	1	64,930	0023	01	03	1	IA940	5,120	1	1	5,120
	출	항	목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22	01	03	1	IA921	64,930	1	1	64,930																			
	0023	01	03	1	IA940	5,120	1	1	5,1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22		JJ005		1/123456																						
2		0022		JS008		11100010/20170603																						
<p>주) JJ005 :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역을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8 : ‘치료입원확인 위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p>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 코드	특정내역	설 명
JJ00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 치료입원 확인을 위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의 내역을 「면허종류 /면허번호」형태로 기재함                      &lt;면허종류&gt; 1:의사</p> <p>◆ 기재형식 : 9(1)/9(6)                      ※ 6자리 미만의 면허번호 작성시 실제 면허번호대로 기재</p>
JS008	위탁진료	<p>◆ 치료입원 확인을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치료입원확인일」형태로 기재</p> <p>◆ 기재형식 : 9(8)/ccyyymmdd</p>

○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

라.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 (1) 시범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 (2) 시범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 받은 명세서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3호, 2018.12.18., 일부개정]  
 [별표 7] <개정 2018.6.29.> [시행 2018.12.18.]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 1. 일반원칙

- 가. 보장구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장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 나. 가목의 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위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위커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위커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업소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 마.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  
 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  
 22호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  
 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 바. 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  
 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 사.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장구의 기준액(제2호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며, 이  
 하 이 표에서 같다),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  
 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실구입금액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  
 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 자. 제2호에 따른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  
 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차. 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  
 람이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  
 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1) 머리 및 목 지지대
-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3) 다리 및 발 지지대

## 2.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fore -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가. 팔 의지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 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 -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 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 (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 - 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 - 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bent - 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 - 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나. 다리 의지	8) 종아리 의지(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 - 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 팔 보조기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7) 코르셋(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 - 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바. 다리 보조기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랩,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 (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 (90도 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아. 그 밖의 보장구	1)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사용	일반형	480,000	5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 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 는 경우 사용	활동형	1,000,000	5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 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자세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	틸팅형, 리클라이 닝형	80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3) 목발(crutches)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4) 의안(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14,000	0.5
	10)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 한 보조기구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 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악화되거나 완전히 상실 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 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 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아. 그밖의 보장구	13) 전동스쿠터(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 방식	휠체어 사용자가 신경손상, 근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아. 그 밖의 보장구	16) 욕창예방 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 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18) 지지위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 3.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구분	공단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단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장구	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단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4. 그 밖의 사항

- 가.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본다.
- 나. 보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한다.
-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제2호의 내구연한을 산정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장구의 급여내용과 연계하여 산정한다.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017.12.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2018.1.1 시행)

###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별표] 전문 중,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3호는 제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3호 관련

###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개정 2010.4.27.>

1. 보철금속재료는 금합금, 팔라듐합금 또는 코발트크롬합금을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보철원칙] <개정 2010.4.27., 2014.3.31., 2015.12.30., 2016.12.30>

1. 분류번호 카-1: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 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4분의 3 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및 카-4: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듐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분류번호 카-5: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삭 제 2015.12.30.>
6. 분류번호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듐이 25% 이상인 팔라듐·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카-12 및 카-13: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총의치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치과보철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12.30., 2016.12.30>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340,000
카-2	3/4금관	280,00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4,000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카-10	포스트(기성품)	93,00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1,507,00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1,060,00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4,00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10.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활동형 휠체어

마. <삭제 2016.12.30.>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1.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활동형 휠체어: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킬로그램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면에서 280밀리미터 이하, 후륜축 조절 기능이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수·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6.12.30.>

라.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마.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2.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13. <삭제 2014.3.31.>

14. 집노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5. <삭제 2016.12.30.>

16. 요양이 종결 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6.12.30., 2017.12.29>

1. 의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팔 의지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년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다리 의지	타-14-1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 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 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1,905,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2,73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 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 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3,284,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4,116,000	5년

## 2. 보조기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 보조기	타-22-라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 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120,000	3년
	타-23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년
척추 보조기	타-24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 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203,000	3년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척추 보조기	타-25	등·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a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136,000	3년
다리 보조기	타-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282,000	3년

### 3. 기타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구두	타-31	〈삭제 2017.12.29.〉			
휠체어	타-32-3	활동형 휠체어 (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756,000	5년
	타-32-4	수·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934,000	6년
기타	타-37-1	가발(wig)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깃가	5년

구분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연한	
기타	타-37-4	〈삭제 2016.12.30.〉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 - 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삭제 2016.12.30.〉				
	타-37-6	집뇨기 (고무제-역류방지형) (urine bag)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57,000	1년	
	타-37-7	〈삭제 2016.12.30.〉				
	타-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가. 차량용		2,500,000	5년	
		나. 벽체용		2,500,000	5년	

####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타-42	혹크 교환	351,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팔의지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다리의지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707,000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2,181,000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	158,000	
타-49		족부 교환	32,00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틱트 교환	24,0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416,000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틱트 교환	21,000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틱트카바 교환	18,0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틱트카바 교환	21,000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보조기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타-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휠체어	타-68	시트 교환	27,000
	타-69	등받이 교환	27,000
	타-70	뒷바퀴 교환	49,000
	타-70-1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	18,000
	타-70-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활동형)	21,000
	타-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	12,000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	6,000
	타-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타-70-6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타-71	앞바퀴 교환	25,000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타-72	팔받침 교환	12,000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13,000
	타-73	발판 교환	14,000
	타-74	핸드립 교환	25,000
	타-75	브레이크 교환	14,000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타-77-1	1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32,000
	타-77-2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타-77-3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타-77-4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타-77-5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타-78-1	16"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40,000
	타-78-2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타-78-3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타-83	옆받이 교환	16,00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타-85	요크 교환	30,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구분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타-87	삭제<2011.12.30>	
	타-94	팔걸이 교환	17,000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17,000
	타-95	발걸이 교환	35,000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35,000
전동 스쿠터	타-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타-88-3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타-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타-89-3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타-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타-90-3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기타	타-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2개 1세트	19,800

##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12.31, 2010.4.27, 2014.3.31, 2017.12.29〉

1.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의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한다.
2.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14.3.31〉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개정 2008.12.31, 2011.12.30, 2014.3.31., 2015.12.30.〉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금액(원)	회사명
더-1	Holoderm	56cm <sup>2</sup>	1장	784,000	테고사이언스(주)
더-2	〈삭 제 2008.12.31.〉				
더-3	〈삭 제 2011.12.30.〉				
더-4	〈삭 제 2011.12.30.〉				
더-5	케라힐	1ml	1바이알	3,122,640	(주)엠씨티티

##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신설 2008.12.31〉

[지급원칙] 〈개정 2010.4.27〉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0.4.27., 2016.12.30., 2017.12.29〉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	이동형 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	
	가.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머-2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219,000
머-3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	397,000
머-4	자가도뇨기구	척추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노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14,000
머-5	할로베스트(Halovest)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추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800,000

## 제15절 재활치료료

〈신설 2011.12.30〉

###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어-1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Attention·Memory)] [1일당]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630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어-3	증식치료(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척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일에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2부위 이내만 산정 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만 산정	5,750 11,520
어-4	도수치료(Manual Therapy) [1일당]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맞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25,000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 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 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 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 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li> <li>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 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 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 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li> <li>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li> </ol>	42,030

## 2. 검사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7.12.29>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 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분류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Assessment)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표준화된 도구(K-WAB 등)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40,190
여-2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28,130 56,260



##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12.30.〉

###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관련 청구코드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10010	201404101	카1	주조금관	340,000	
10020	20140401	카2	3/4금관	280,000	
10030	20140401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403,000	
10040	20140401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97,000	
10050	20140401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44,000	
10090	2014040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35,000	
10100	20140401	카10	포스트(기성품)	93,000	
10110	20140401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507,000	
10120	20140401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1,060,000	
10130	20090101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1,487,000	
10140	20140401	카14	임시레진관	24,000	
20011	20070306	타1가	어깨가슴의지 - 미관형	720,000	건강보험
20012	20070306	타1나	어깨가슴 의지 - 기능형	1,400,000	건강보험
20021	20070306	타2가	어깨관절 의지 - 미관형	790,000	건강보험
20022	20070306	타2나	어깨관절 의지 - 기능형	1,470,000	건강보험
20031	20070306	타3가	짧은 위팔 의지 - 미관형	570,000	건강보험
20032	20070306	타3나	짧은 위팔 의지 - 기능형	1,250,000	건강보험
20041	20070306	타4가	표준 위팔 의지 - 미관형	570,000	건강보험
20042	20070306	타4나	표준 위팔 의지 - 기능형	1,250,000	건강보험
20051	20070306	타5가	팔꿈치관절 의지 - 미관형	560,000	건강보험
20052	20070306	타5나	팔꿈치관절 의지 - 기능형	1,240,000	건강보험
20061	20070306	타6가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560,000	건강보험
20062	20070306	타6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기능형	860,000	건강보험
20063	20170101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610,000	
20071	20070306	타7가	짧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20072	20070306	타7나	짧은 아래팔 의지 - 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20073	20070306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500,000	
20081	20070306	타8가	표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082	20070306	타8나	표준 아래팔 의지 - 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20083	20170101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5,500,000	
20091	20070306	타9가	손목관절 의지 - 미관형	450,000	건강보험
20092	20070306	타9나	손목관절 의지 - 기능형	750,000	건강보험
20093	20170101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5,700,000	
20101	20070306	타10가	손 의지 - 미관형	250,000	건강보험
20102	20070306	타10나	손 의지 - 기능형	590,000	건강보험
20110	20070306	타11	손가락 의지 - 미관형	120,000	건강보험
20120	20070306	타12	한쪽편 골반 의지	1,740,000	건강보험
20130	20070306	타13	엉덩이관절 의지	1,740,000	건강보험
20143	20070306	타14가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1,560,000	건강보험
20144	20070306	타14나	넓적다리 의지 - 실리콘형	2,270,000	건강보험
20145	20070306	타14-1가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 일반형 소켓	1,905,000	
20146	20070306	타14-1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 실리콘형 소켓	2,735,000	
20151	20070306	타15가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 일반형 소켓	3,284,000	
20152	20070306	타15나	넓적다리의지(인공지능식) - 실리콘형 소켓	4,116,000	
20153	20070306	타15-1가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 일반형	1,560,000	건강보험
20154	20070306	타15-1나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 실리콘형	2,270,000	건강보험
20161	20070306	타16가	무릎관절 의지 - 일반형	1,490,000	건강보험
20162	20070306	타16나	무릎관절 의지 - 실리콘형	2,010,000	건강보험
20171	20070306	타17가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 일반형	1,290,000	건강보험
20172	20070306	타17나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 실리콘형	1,810,000	건강보험
20181	20070306	타18가	짧은 종아리 의지 - 일반형	860,000	건강보험
20182	20070306	타18나	짧은 종아리 의지 - 실리콘형	1,520,000	건강보험
20191	20070306	타19가	종아리 의지 - 일반형	740,000	건강보험
20192	20070306	타19나	종아리 의지 - 실리콘형	1,480,000	건강보험
20201	20070306	타20가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 일반형	530,000	건강보험
20202	20070306	타20나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 실리콘형	1,040,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211	20070306	타21가	의족 - 일반형	220,000	건강보험
20212	20070306	타21나	의족 - 실리콘형	720,000	건강보험
20221	20070306	타22가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240,000	건강보험
20222	20070306	타22나	어깨뼈 외전 보조기	290,000	건강보험
20223	20070306	타22다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260,000	건강보험
20224	20180101	타22라	어깨 보조기	120,000	
20231	20070306	타23가	짧은 팔 보조기	90,000	건강보험
20232	20070306	타23나	손가락관절 보조기	50,000	건강보험
20233	20070306	타23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142,000	
20242	20070306	타24나	목뼈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건강보험
20243	20070306	타24다	목뼈보조기 - cervical Jacket	380,000	건강보험
20244	20070306	타24가	목뼈보조기 - 필라텔피아	70,000	건강보험
20245	20070306	타24라	목뼈보조기 - 4지주 목뼈보조기	203,000	
20253	20070306	타25다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190,000	건강보험
20254	20070306	타25라	척추보조기 - 코르셋	80,000	건강보험
20255	20070306	타25가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400,000	건강보험
20256	20070306	타25나	척추 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보조기)	150,000	건강보험
20257	20070306	타25마	등·허리뼈 보조기-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136,000	
20260	20070306	타26	골반보조기	120,000	건강보험
20271	20070306	타27가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540,000	건강보험
20272	20070306	타27나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410,000	건강보험
20280	20070306	타28	양쪽 긴 다리 보조기	790,000	건강보험
20291	20070306	타29가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190,000	건강보험
20292	20070306	타29나	무릎관절 보조기 - 레눅스힐	160,000	건강보험
20293	20070306	타29다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80,000	건강보험
20294	20070306	타29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기(수가공품)	282,000	
20302	20070306	타30나	짧은다리금속형 보조기 - 크렌자크식	350,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303	20070306	타30다	짧은다리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90도 고정형)	300,000	건강보험
20304	20070306	타30라	짧은 다리보조기 - 무릎관절체중부하식	370,000	건강보험
20305	20070306	타30마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일체형	120,000	건강보험
20306	20151115	타30바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고정형(90도 고정형)	310,000	건강보험
20307	20151115	타30사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크렌자크식	360,000	건강보험
20311	20070306	타31가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자	250,000	건강보험
20314	20070306	타31가주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250,000	건강보험
20320	20070306	타32	수동휠체어	480,000	건강보험
20321	20070306	타32-1	전동휠체어	2,090,000	건강보험
20322	20070306	타32-2	전동스쿠터	1,670,000	건강보험
20323	20070306	타32-3	활동형 휠체어	756,000	
20324	20140401	타32-4	수·전동 겸용 휠체어	3,934,000	
20330	20070306	타33	목발	15,000	건강보험
20331	20070306	타33-1	지팡이	20,000	건강보험
20340	20070306	타34	보청기	1,310,000	건강보험
20350	20070306	타35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건강보험
20351	20070306	타36	콘택트렌즈	80,000	건강보험
20352	20070306	타35-2	망원경	100,000	건강보험
20353	20070306	타35-1	돋보기	100,000	건강보험
20360	20070306	타37	의안	620,000	건강보험
20370	20070306	타37-1	가발	삿가	
20371	20070306	타37-2	흰지팡이	14,000	건강보험
20372	20070306	타37-3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건강보험
20374	20090101	타37-4	욕창예방 방석(고무제 - 공기격자형)	250,000	건강보험
20375	20090101	타37-5가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 - 공기격자형)	1,449,000	
20373	20090101	타37-5나	욕창예방 매트리스(교대부양형)	400,000	건강보험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376	20070306	타37-6	집노기(고무제 - 역류방지형)	57,000	
20377	20090101	타37-7가	이동식리프트(본체)	1,700,000	건강보험
20378	20090101	타37-7나	이동식리프트(베이스)	800,000	건강보험
20361	20180101	타37-8가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2,500,000	
20362	20180101	타37-8나	설치형 전동리프트-벽체용	2,500,000	
20380	20070306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20390	20070306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20391	20070306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20410	20070306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20420	20070306	타42	혹크 교환	351,000	
20430	20070306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20440	20070306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20450	20070306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20451	20070306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20452	20070306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교환(기능형)	964,000	
20453	20070306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20454	20070306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20455	20070306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20460	20070306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20470	20070306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707,000	
20471	20070306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인공지능식)	2,181,000	
20472	20070306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20480	20070306	타48	발목장식 교환	158,000	
20490	20070306	타49	족부 교환	32,000	
20500	20070306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20510	20070306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20520	20070306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틱 교환	24,000	
20530	20070306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540	20070306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교환	416,000	
20992	20180101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틱트 교환	21,000	
20993	20180101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네틱트카바 교환	18,000	
20550	20070306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네틱트카바 교환	21,000	
20560	20070306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20570	20070306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20580	20070306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20590	20070306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20591	20070306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20592	20070306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20593	20070306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20594	20070306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20595	20070306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20596	20070306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20597	20070306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646,000	
20598	20070306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517,000	
20599	20070306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20990	20070306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20991	20070306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20600	20070306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20610	20070306	타61	듀랄루민 컵 교환	25,000	
20620	20070306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20630	20070306	타63	커피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20640	20070306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20650	20070306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교환	68,000	
20660	20180101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20661	20180101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20680	20070306	타68	시트 교환	27,000	
20690	20070306	타69	등받이 교환	27,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700	20070306	타70	뒷바퀴 교환	49,000	
20701	20090101	타70-1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	18,000	
20702	20090101	타70-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 - 활동형)	21,000	
20703	20120101	타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	12,000	
20704	20120101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	6,000	
20705	20120101	타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20706	20120101	타70-6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20710	20070306	타71	앞바퀴 교환	25,000	
20711	20090101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20720	20180101	타72	팔받침 교환	12,000	
20911	20180101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20912	20180101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13,000	
20730	20070306	타73	발판 교환	14,000	
20740	20070306	타74	핸드림 교환	25,000	
20750	20070306	타75	브레이크 교환	14,000	
20760	20070306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20770	20070306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20771	20090101	타77-1	12" 뒷바퀴 타이어(튜브포함-전동)	32,000	
20772	20120101	타77-2	12"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20773	20120101	타77-3	12"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20774	20120101	타77-4	14"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20775	20120101	타77-5	14"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20780	20070306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20781	20090101	타78-1	16" 뒷바퀴 타이어(튜브포함 - 전동)	40,000	
20782	20120101	타78-2	16"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20783	20120101	타78-3	16"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20790	20070306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20800	20070306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20810	20180101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820	20070306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20830	20070306	타83	옆받이 교환	16,000	
20840	20070306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20850	20070306	타85	요크 교환	30,000	
20860	20070306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20870	20101215	타87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1세트)	160,000	건강보험
20880	20120101	타88	10"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50,000	
20881	20120101	타88-1	10"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50,000	
20882	20120101	타88-2	10"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20883	20120101	타88-3	10"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20890	20120101	타89	11"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60,000	
20891	20120101	타89-1	11"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60,000	
20892	20120101	타89-2	11"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20893	20120101	타89-3	11"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20900	20120101	타90	12" 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70,000	
20901	20120101	타90-1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70,000	
20902	20120101	타90-2	12"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20903	20120101	타90-3	12"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20910	20140401	타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2개/세트)	19,800	
20920	20131001	타92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몸통 및 골반지지대	880,000	건강보험
20921	20131001	타92-1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	건강보험
20922	20131001	타92-2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팔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건강보험
20923	20131001	타92-3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 다리 및 발지지대	240,000	건강보험
20930	20151115	타93-1	지지워커 - 전방	50,000	건강보험
20931	20151115	타93-2	지지워커 - 후방	300,000	건강보험
20913	20180101	타94	팔걸이 교환	17,000	
20914	20180101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20915	20180101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코드	적용일자	분류번호	한글명칭	금액(원)	비고
20916	20180101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17,000	
20924	20180101	타95	발걸이 교환	35,000	
20925	20180101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20926	20180101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20927	20180101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35,000	
80001	20070306	더1	Holoderm	784,000	
80005	20160101	더5	케라힐	3,122,640	
12010	20090101	머1가	이동형 산소치료기 -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12011	20090101	머1나	이동형 산소치료기 -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12020	20090101	머2	의료용 흡입기	219,000	
12030	20090101	머3	의료용 흡인기	397,000	
12040	20090101	머4	자가도뇨기구	14,000	
12050	20170101	머5	할로베스트	1,800,000	
51010	20180101	어1	언어치료	36,540	
51020	20180101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주의·기억)	17,630	
51030	20180101	어3가	증식치료 - 가. 사지관절부위	5,750	
51031	20180101	어3나	증식치료 - 나. 척추부위	11,520	
51040	20180101	어4	도수치료	25,000	
51050	20170101	어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42,030	
52010	20180101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40,190	
52020	20180101	여2가	발음 및 발성검사 - 가. 발음검사	28,130	
52021	20180101	여2나	발음 및 발성검사 - 나. 발성검사	56,260	
54010	20170101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응급의료수가기준





## 응급의료수가기준

[시행 2014.6.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83호, 2014.5.27., 개정]

### 1. 적용기준

-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산정기준

-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부칙** 〈제2014-83호, 2014.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6. 5.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분류	점수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812.28
○ 분야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703.98
○ 지역응급의료기관	270.76

나. 응급처치료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응급처치]로 분류된 항목
- 2) 기타 항목 : 항목별 점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른다.

### 기타 항목 분류

- 심낭천자 Pericardiocentesis
- 체외용 심박기 거치술
  - 가. 체외용 심박기 장치술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나. 체외용 심박기 조작[1일당]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가.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with Atrial or Ventricular Lead(Single Chamber)
  - 나. 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with Atrial and Ventricular Lead(Dual Chamber)
- 경피적 인공심박동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 주 : 1. 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1회용 Electronic Patch는 별도 산정한다.

### 기타 항목 분류

-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 폐쇄식 흉강삽관술 Thoracostomy
  - 가. 폐쇄식 Closed
  - 나. 개방식 Open
- 흉막천자 Thoracentesis
- 운상갑상막절개술 Cricothyroidotomy
  - 가. 투관침에 의한 경우 Trochar
  - 나. 피부절개에 의한 경우 Skin Incision
-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 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 중심정맥압 측정 [1일당]
  - 주 : 사용된 CVP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 가. 관혈적 기관절개술 Invasive Tracheostomy
  - 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93호, 2018.12.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8. (생략)

[전문개정 2011.8.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1.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賣出錢票)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표 3] &lt;개정 2014.5.1.&gt;

##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전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b>제1장 총칙</b>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3.8.6.&gt;</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9.2.6., 2013.8.6., 2016.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li> <li>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li> </ol>	<p><b>제2조(건설기계의 범위)</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lt;개정 2014.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덩크트럭</li> <li>2. 타이어식 기중기</li> <li>3. 콘크리트믹서트럭</li> <li>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li> <li>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li> <li>6. 타이어식 굴삭기</li> <li>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트럭기계차</li> <li>나. 도로보수트럭</li> </ol> </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p> <p>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p> <p>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報酬)”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p> <p>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p> <p>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p>	<p>다. 노면 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p> <p>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p> <p>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p> <p>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p> <p>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p>		
<p>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할 것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b>제4조(민법)의 적용</b>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b>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b>		
<b>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b>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b>제3조(책임보험금 등)</b>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p>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p> <p>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p> <p>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자</p> <p>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p>	<p>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報酬)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p> <p>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p> <p>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돌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2.8.22.&gt;</p> <p>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p> <p>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p>	<p>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報酬)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p> <p>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p> <p>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돌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lt;개정 2012.8.22.&gt;</p> <p>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p> <p>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p>	<p>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lt;개정 2014.12.30.&gt;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예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lt;개정 2013.3.23.&gt;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보</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유하는 자동차</p> <p>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 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p>	<p>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시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li> <li>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li> <li>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임명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li> </ol> <p>[본조신설 2012.8.22.]</p>	<p>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 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자동차등록증 사본</li> </ol>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2013.3.23.>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본조신설 2012.2.22.]		1. 영 제5조의2의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정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보관일자·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 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 별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 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우(특별자치도지사의 경 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 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별 제6조제 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 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6.1.22.>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 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2.9.4.]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09.2.6.&gt;</p> <p>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li> <li>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li> <li>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기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설 2014.2.5.&gt;</p>	<p>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p> <p>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p> <p><b>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b>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p> <p>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p> <p>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등록번호</li> <li>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다)을 영치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외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2.22.&gt;</p> <p>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23.&gt;</p>	<p>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9.12.31, 2013.3.23&gt;</p> <p>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p>	<p>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 데 필요한 항목</p> <p>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 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p>		<p>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p> <p>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09.2.6., 2013.3.23.&gt;</p> <p>③ 삭제 &lt;2009.2.6.&gt;</p> <p>④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p> <p>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 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p> <p>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lt;개정 2013.3.23., 2014.12.30., 2015. 12.22., 2016.12.30.&gt;</p> <p>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p> <p>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p> <p>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p> <p>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p> <p>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p> <p>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p>	<p>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p> <p>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등록번호</li> <li>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li> <li>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 데 필요한 항목</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길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또는 법 제5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p> <p>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p> <p>5의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기금의 관리·운용 내용</p> <p>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 내용</p> <p>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내용</p> <p>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p> <p>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p>		
<p>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li> <li>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li> <li>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li> <li>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li> </ol>	<p>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 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lt;개정 2012.9.4., 2013.3.23.&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p> <p>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 또는 검안서</li> <li>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li> <li>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기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기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li> </ol> <p>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 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 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 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 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 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p>	<p>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 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9조 삭제 &lt;2014.12.30.&gt;</p>	<p>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 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0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의 경우: 1억원</li> <li>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li> <li>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li> </ol> <p>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5.1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 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li> </ol>	<p>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09.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의 경우: 1억원</li> <li>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li> <li>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li> </ol> <p>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5.1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 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li> </ol>	<p>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 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9.2.6., 2016.12.20.&gt;</p>	<p>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 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화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③ 삭제 &lt;2016.12.30.&gt;</p>	
<p>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기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p>	<p>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기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자제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기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lt;개정 2009.2.6.&gt;</p> <p>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기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기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6.22.&gt;</p> <p>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p>	<p>문서로 한다.</p> <p>② 별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16조(진료수기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별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lt;개정 2014.2.5.&gt;</p> <p>② 삭제 &lt;2014.2.5.&gt; [제목개정 2014.2.5.]</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지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li> <li>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li> <li>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li> <li>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 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li> <li>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li> </ol>		
<p>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p> <p>③ 삭제 &lt;2015.6.22.&gt;</p>	<p>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14.2.5.&gt;</p> <p>[본조신설 2012.8.22.]</p> <p>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p> <p>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p>	<p>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p> <p>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① 건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 2015.6.22.&gt;</p> <p>[본조신설 2012.2.22.]</p>	<p>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 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2.5.]</p>	<p>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별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9.4.]</p> <p>제6조의4(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13조(임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lt;개정 2012.8.22., 2014.2.5.&gt;</p>	<p>수 있다. &lt;개정 2014.2.7.&gt;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4.2.7.&gt;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2.7.&gt; [본조신설 2012.9.4.], [제목개정 2014.2.7.]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12.9.4.]</p>
<p>제13조(임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lt;개정 2012.8.22., 2014.2.5.&gt;</p>	<p>제6조의6(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2.7.]</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제한 보험회사등은 임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임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임원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별 제13조의2 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원 중인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2.6.]</p>	<p>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의 임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기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에 임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을 제외한 의료기관</li> <li>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임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li> <li>3. 상급종합병원에 임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li> </ol> <p>[본조신설 2009.12.31.]</p>	
<p>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p>	<p>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2.2.22.&gt;</p> <p>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lt;신설 2012.2.22.&gt;</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2.22.&gt;</p> <p>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2.22.&gt;</p> <p>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중사하거나 중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 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2.2.22.&gt;</p>	<p>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li> <li>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li> <li>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li> </ol> <p>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 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 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8.22.]</p>	
<p>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는 경우에 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b>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b></p>		
<p>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9.2.6., 2013.3.23.&gt;</p> <p>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lt;개정 2012.2.22., 2013.3.23.&gt;</p>	<p>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p>	<p>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li> <li>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li> <li>3. 삭제 &lt;2014.2.7.&gt;</li> <li>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li> <li>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li> </ol>
<p>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li> <li>2. 시간당 공임(工賃)</li> <li>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li> <li>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li> </ol>	
<p>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li> <li>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권의</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li> <li>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li> </ol>	<p>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 나 경험이 풍부한 자</li> <li>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li> <li>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li> <li>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li> </ol>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사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2.2.22., 2013.3.23.&gt;</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수 있다.</p> <p>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p> <p>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별 제 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li> </ol>	
<p>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p>		
<p>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기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p>	<p>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별 제12조의2제2</li> </o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2013.8.6.&gt;</p> <p>② 삭제 &lt;2013.8.6.&gt;</p> <p>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3.8.6.&gt;</p> <p>④ 삭제 &lt;2013.8.6.&gt;</p> <p>⑤ 삭제 &lt;2013.8.6.&gt;</p> <p>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3.8.6.&gt;</p>	<p>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별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 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small>[본조신설 2014.2.5.]</small></p>	
<p>제20조(심사 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기준에 따라 심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②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b>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6.22.&gt;</p>		
<p><b>제22조(심의회의 권한)</b>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p>		
<p><b>제22조의2(자료의 제공)</b>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small>[본조신설 2016.3.22.]</small></p>		
<p>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small>[본조신설 2012.2.22.]</small></p>		
<b>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b>		
<p>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p>	<p>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p>	<p>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3.23.&gt;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 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금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p> <p>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려진 것이 명백한 경우</p>	<p>경우</p> <p>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p> <p>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p> <p>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p> <p>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p>
<p>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3.3.23., 2017.11.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録)을 한 경우</li> <li>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li> </ol>		<p>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li> <li>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li> <li>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제2</li> </o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p> <p>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p> <p>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종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p> <p>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p> <p>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p> <p>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p>		
<p>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p>		
<p>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p>	<p>제18조(구상의 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p>	<p>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 11.28.&gt;</p> <p>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p> <p>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p> <p>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 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p> <p>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 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 등을 변경된 보험금 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p>	<p>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p> <p>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p>	<p>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lt;개정 2013.3.23., 2015.1.8.&gt;</p> <p>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p> <p>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사고 1건당 100만원</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2. 그 밖에 보험금 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p>		
<p><b>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lt;개정 2013.8.6.&gt;</b></p>		
<p>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lt;개정 2012.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li> <li>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li> </ol>	<p>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 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 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li> <li>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li> </ol>	
<p>②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 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찰청장</li> <li>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li> <li>3. 보험요율산출기관</li> <li>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lt;개정 2012.2.22.&gt;</li> <li>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2.22.&gt;</li> <li>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lt;개정 2012.2.22., 2013.3.23.&gt;</li> </ol>	<p>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li> <li>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별 제30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6. 청구금액</li> <li>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단서 또는 검안서</li> <li>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li> </ol> </li> <li>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별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별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li> <li>④ 피해자가 별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별 제10조 및 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기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lt;개정 2013.3.23.&gt;</p> <p>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5.1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li> <li>2.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li> <li>3.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li> <li>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li> <li>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li> <li>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li> <li>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li> <li>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li> </ol>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제21조(지원대상자) ① 별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5.11.30.&gt;</p> <p>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p> <p>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09.12.31., 2012.8.22.&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lt;개정</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2013.3.23.&gt;</p> <p>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li> <li>2. 피해원인, 피해현황 및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li> <li>3. 가해차량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본조신설 2012.8.22.]</p> <p>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li> <li>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보급</li> <li>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p>	<p>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31.,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li> <li>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li> <li>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li> <li>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li> <li>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li> <li>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ol>	
<p>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li> <li>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보급</li> <li>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p>	<p>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p> <p>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li> <li>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li> <li>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지원</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p>	

<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p>	<p>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li> <li>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li> <li>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2.5.]</li> </ol>	
<p>제31조(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6.3.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li>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삭제 &lt;2016.12.20.&gt;</p>	<p>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li> <li>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li> </ol> <p>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li> <li>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li> </ol> <p>③ 삭제 &lt;2016.12.30.&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3.22.]</p>		
<p><b>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li> <li>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li> </ol> </li> </ol>	<p><b>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b>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기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2.〉</p> <p><b>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li> <li>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li> </ol>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건을 갖춘 법인</p> <p>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5.27., 2013.3.23.&gt;</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5.27.&gt;</p> <p>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 계획서(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p> <p>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p> <p>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p> <p>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p> <p>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 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li> </ol>	<p>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임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li> <li>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li> <li>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li> <li>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li> </ol>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된 경우</p> <p>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lt;개정 2013.3.23.&gt;</p> <p>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p> <p>2. 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li> <li>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동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li> <li>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li> <li>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 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li> <li>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li> <li>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li> </ul> </li> </ol>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근무하거나 근무한 자</p> <p>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p> <p>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p> <p>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p> <p>사.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p> <p>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9.12.31.&gt;</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lt;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2013.3.23.&gt;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lt;개정 2012.7.4.&gt;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안전에 관하여 지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p> <p><b>제28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li>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35조(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 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lt;개정 2009.2.6.&gt;</p> <p>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로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본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12.31.]</p>	
<p>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p>	<p>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lt;개정 2015. 11. 20., 2018. 9. 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li> <li>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li> </o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p> <p>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규격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p> <p>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p> <p>6. 「근로기준법」</p> <p>7. 「국민건강보험법」</p>	
<p>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야 한다. &lt;개정 2013.8.6., 2016.12.20.&gt;</p> <p>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p>	<p>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 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법」에 따른 외국보험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1조(분담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p>	<p>제11조(분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lt;개정 2008.11.13., 2013.3.23.&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lt;신설 2016.3.22.&gt;</p> <p>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6.12.20.&gt;</p> <p>[제목개정 2013.8.6.]</p>	<p>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 제32조의 2제2항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lt;개정 2009.12. 31., 2013.3.23., 2016.12.30.&gt;</p> <p>② 삭제 &lt;2016.12.30.&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6.12.30.&gt;</p> <p>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6.12.30.&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 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직결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 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담금의 징수·관리</li> <li>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li> <li>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④ 삭제 &lt;2009.12.31.&gt;</li> <li>⑤ 삭제 &lt;2009.12.31.&gt;</li> <li>⑥ 삭제 &lt;2009.12.31.&gt;</li> <li>⑦ 삭제 &lt;2009.12.31.&gt;</li> </ol> <p>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 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직결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 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담금의 징수·관리</li> <li>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li> <li>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④ 삭제 &lt;2009.12.31.&gt;</li> <li>⑤ 삭제 &lt;2009.12.31.&gt;</li> <li>⑥ 삭제 &lt;2009.12.31.&gt;</li> <li>⑦ 삭제 &lt;2009.12.31.&gt;</li> </ol> <p>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 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직결하게 수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 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31., 2013.3.23.,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담금의 징수·관리</li> <li>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li> <li>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④ 삭제 &lt;2009.12.31.&gt;</li> <li>⑤ 삭제 &lt;2009.12.31.&gt;</li> <li>⑥ 삭제 &lt;2009.12.31.&gt;</li> <li>⑦ 삭제 &lt;2009.12.31.&gt;</li> </ol> <p>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분담금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을 추가로 내야 할 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p>
<p>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구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강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2.2.22.&gt;</p> <p>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기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lt;신설 2009.2.6.&gt;</p>	<p>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압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유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9.12.31., 2013.3.23., 2014.12.30.&gt;</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b>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b> 법 제39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 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b>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b>	<b>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b> 채권정리위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p>	<p>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lt;개정 2013.3.23., 2016.12.30.&gt;</p> <p>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p> <p>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p> <p>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할 사람</p> <p>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lt;삭제 2015.12.31.&gt;[본조신설 2009.12.31.]</p> <p>제33조의4(채권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문조신설 2015.12.31.],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 5로 이동 &lt;15.12.31.&gt;]</p> <p><b>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b>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전의 재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p> <p>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전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5는 제33조의6으로 이동 &lt;'15.12.31.&gt;]</p> <p><b>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b> 채권정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제6항 및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lt;개정 2015.12.31.&gt;</p> <p>[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6은 제33조의 7로 이동 &lt;'15.12.31.&gt;]</p> <p><b>제33조의7(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b> 채권정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7은 제33조의8로 이동 &lt;'15.12.31.&gt;]</p> <p><b>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제1</b></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기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기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5.12.22.&gt;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lt;'15.12.31.&gt;]</p>	<p>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기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기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5.12.22.&gt;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8은 제33조의9로 이동 &lt;'15.12.31.&gt;]</p>	
<p><b>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lt;신설 2015.6.22.&gt;</b></p>		
<p>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무소에 관한 사항</li> <li>4. 임직원에 관한 사항</li> <li>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li> <li>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li> <li>7. 이사회에 관한 사항</li> <li>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ol> <p>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6.22.]</p>		
<p><b>제39조의4(업무 등)</b>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li> <li>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li> <li>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li> <li>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li> </ol> <p>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li> </ol>		<p><b>제11조의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b>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9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li> <li>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공제사업을 하는 기관</p> <p>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p> <p>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p> <p>[본조신설 2015.6.22.]</p>		<p>3.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p> <p>4. 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1.22.]</p>
<p>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p> <p>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p> <p>⑦ 이사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p>		<p>제11조의3(이사회)의 구성) ① 법 제39조의5제5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원장 1명, 이사 8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이사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p> <p>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공제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p> <p>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22.]</p>		<p>다. 교통·금융·보험·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p> <p>제11조의4(이사회회의 운영) ①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p>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p> <p>③ 이사회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 비용을 받을 수 있다.</p> <p>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에 따른 수입금</li> <li>2. 제2항에 따른 수입금</li> <li>3. 그 밖의 수입금</li> <li>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p>[본조신설 2015.6.22.]</p>	<p>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수입금을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12.22.], [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lt;2015.12.31.&gt;]</p>	
<p>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한다. [본조신설 2015.6.22.]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b>제39조의9(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 [본조신설 2015.6.22.]		
<b>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 <b>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b> <b>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b> <b>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 [본조신설 2015.6.22.]		
<b>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lt;신설 2016.12.20.&gt;</b>		
<b>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b> [본조신설 2016.12.20.]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li> <li>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ol>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진산망의 구성·운영</li> <li>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li> <li>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li> <li>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지불금의 보상</li> <li>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 사업</li> <li>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li> <li>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li> <li>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 행사</li> <li>9.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li> <li>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li> <li>11.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li> <li>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li> </o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12.20.]		
<b>제39조의13(기금의 관리·운용) ①</b>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b>②</b>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b>③</b>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b>제33조의10(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b> <b>①</b>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b>②</b>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증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2로 이동 <2016.12.30.>]	
	<b>제33조의11(기금의 회계기관) ①</b> 국토교통부장관은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채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보험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채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p> <p>[본조신설 2016.12.30.]</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b>제7장 보칙 &lt;개정 2015.6.22.&gt;</b></p>		
<p>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p>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lt;개정 2009. 2.6.&gt;</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허가·검사·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li> <li>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li> <li>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li> <li>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li> </ol>		<p>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 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lt;개정 2012.9.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과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li> <li>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li> </ol> <p>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2014년 1월 1일</li> <li>2. 제10조에 따른 구상금액: 2014년 1월 1일</li> </ol> <p>[본조신설 2013.12.30.]</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 [전문개정 2012.2.22.]</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할시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lt;개정 2009.5.27., 2013.3.23., 2013.8.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li> <li>2.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li> <li>3. 관계인에 대한 질문</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제34조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9.3.]</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범행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할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6.12.20.&gt;</p> <p>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p>	<p>제33조의12(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p> <p>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li> <li>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li> <li>3. 피해자의 인적사항</li> <li>4. 피해자의 피해정도</li> <li>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li> <li>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li> <li>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li>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100만원</li> <li>2.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li> <li>별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li> <li>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3.23.&gt;</li> <li>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상</li> </ol> </ol>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3.22.]</p>	<p>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3.23.&gt;</p> <p>[본조신설 2012.8.22.], [제33조의10에서 이동 &lt;2016.12.30.&gt;]</p>	
<p>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3.22.]</p>	<p>제33조의13(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li> <li>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li> <li>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운전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li> <li>4.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li> </ol> <p>[본조신설 2016.12.30.]</p>	
<p>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p>	<p>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23.&gt;</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2.5.&gt;</p> <p>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lt;개정 2013.3.23.&gt; [본조신설 2009.9.3.]</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	---	---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b>제45조(권한의 위탁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li> <li>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li> <li>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업무</li> <li>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행사에 관한 업무</li> <li>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li> <li>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할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7.10.24.&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p>	<p><b>제35조(권한의 위탁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방</li> <li>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장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증증 후유장애인, 유 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p><b>제35조(권한의 위탁 등)</b>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방</li> <li>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장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li> </ol>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gt;</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증증 후유장애인, 유 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li> </ol>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2.2.22., 2013.3.23.&gt;</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lt;신설 2013.8.6., 2017.10.24.&gt;</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3.8.6.&gt;</p>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lt;신설 2009.2.6., 2013.8.6.&gt;</p> <p>⑧ 삭제 &lt;2016.12.20.&gt;</p> <p>⑨ 삭제 &lt;2016.12.20.&gt;</p>	<p>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임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임관리전산망 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lt;개정 2009.12.31., 2013.3.23.&gt;</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lt;신설 2014.2.5.&gt;</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12.31., 2013.3.23., 2014.2.5.,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처리상황</li> <li>2. 삭제 &lt;2016.12.30.&gt;</li> <li>3.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li> <li>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li> </ol>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3.23., 2014.2.5.&gt;</p> <p>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3.23., 2014.2.5.&gt;</p> <p>제35조의2 삭제 &lt;2016.12.30.&gt;</p> <p>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별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3.3.23.&gt;</p> <p>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p> <p>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p> <p><b>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범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기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li> </o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임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6.12.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잔산망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li> </ol>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p>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신설 2014.12.30.&gt;</p> <p>⑤ 자동차손해배상긴급원은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신설 2015.12.22.&gt;</p> <p>[본조신설 2012.8.22.]</p> <p>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p> <p>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014년 1월 1일</p> <p>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p> <p>4. 제12조에 따른 임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2014년 1월 1일</p> <p>5. 제25조에 따른 재할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p> <p>6.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등: 2014년 1월 1일</p> <p>[본조신설 2013.12.30.]</p>	
<p>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lt;개정 2013.3.23.&gt;</p> <p>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본조신설 2009.2.6.]</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 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p>		
<p><b>제8장 벌칙 &lt;개정 2015.6.22.&gt;</b></p>		
<p>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09.2.6., 2012.2.22., 2015.1.6.&gt;</p> <p>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p> <p>[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p> <p>[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p> <p>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정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p> <p>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p> <p>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lt;개정 2012.2.22., 2015.1.6.&gt;</p> <p>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p> <p>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p> <p>③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7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범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범인 또는 개인에</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p>		
<p>제48조(과태료) ① 삭제 &lt;2013.8.6.&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외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09.5.27.&gt;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p>	<p>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p> <p>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p> <p>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설 2015.6.22.&gt;</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lt;신설 2009.2.6., 2015.6.22.&gt;</p>		
제49조 삭제 <2009.2.6.>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b>제9장 범죄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lt;개정 2015.6.22.&gt;</b></p> <p>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죄행위”란 제46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2.2.22.&gt;</p> <p>② 이 장에서 “범죄자”란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li> <li>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li> </ol> <p>③ 이 장에서 “범죄금”이란 범죄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lt;개정 2012.2.22.&gt;</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담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lt;개정 2012.2.22., 2013.3.23.&gt;</p>	<p>제37조(범죄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p> <p>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p> <p>제38조(범죄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p> <p>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li> <li>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li> </ol> <p>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li> </ol>	<p>제13조(범죄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 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도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b>제51조(통고처분)</b>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2.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li> <li>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2.8.22.]</p> <p><b>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b>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8.22.&gt;</p> <p>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8.22.&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3.23.&gt;</p>	<p><b>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상)</b>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p>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b>제52조(범칙금의 납부)</b>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lt;개정 2012.2.22.&gt;</p>		<p><b>제15조(범칙금의 납부)</b>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p>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2012. 2.22.&gt;</p>		<p>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9.4.&gt;</p>
<p><b>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b>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p> <p>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li> </ol>		

<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small>[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small>	<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small>[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small>	<b>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small>[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small>
<p><b>부칙</b> &lt;제12021호, 2013.8.6.&gt;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2987호, 2015.1.6.&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5050호, 2013.12.30.&g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부칙</b> &lt;제54호, 2013.12.30.&g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3377호, 2015.6.22.&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25149호, 2014.2.5.&gt;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지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보험회사등이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부칙</b> &lt;제70호, 2014.2.7.&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임원환자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원환 환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부칙</b> &lt;제14092호, 2016.3.22.&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5940호, 2014.12.30.&gt;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p>	<p><b>부칙</b> &lt;제176호, 2015.1.8.&gt;</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lt;제14450호, 2016.12.20.&gt;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lt;제15118호, 2017.11.28.&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p> <p><b>부칙</b> &lt;제26659호, 2015.11.20.&gt;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1&gt;까지 생략 &lt;22&g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t;2&gt;부터 &lt;28&gt;까지 생략</p> <p>제4조 생략</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 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부칙</b> &lt;제280호, 2016.1.22.&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21&gt;까지 생략 &lt;22&g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t;2&gt;부터 &lt;28&gt;까지 생략</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p><b>부칙</b> &lt;제26683호, 2015.11.30.&gt;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생략</p> <p><b>부칙</b> &lt;제26751호, 2015.12.22.&gt;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6844호, 2015.12.31.&gt;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7743호, 2016.12.30.&gt;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2조의2, 제33조의            13 및 제35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b> [법률 제15118호, 2017.11.28., 일부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b>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9.18., 타법개정]</p>	<p><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b>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p>
	<p>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법 제30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 &lt;제29180호, 2018. 9. 18.&gt;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p> <p>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p> <p>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p> <p>⑤부터 ⑧까지 생략</p> <p>제19조 생략</p>	

※ 2013.7. 이전 부칙은 생략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14.12.30.>

##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2급	1,500만원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3급	1,200만원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4급	1천만원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지명(지수)상해급(상급)별 시행권 표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4급	1천만원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5급	900만원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전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5급	900만원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6급	700만원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증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급	500만원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지단차상해배상표준액표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7급	500만원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7급	500만원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8급	300만원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9급	240만원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지단속·손해배상보장비 시행령 별표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2급	120만원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두부</p>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영역	내용
두부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 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 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 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 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
상·하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역	내용
상·하지 공통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영역	내용
공 통	<p>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며.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상·하 지	<p>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하 지	<p>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p>
	<p>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영역	내용
상·하지	<p>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p>
	<p>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별표 2] <개정 2014.12.30.>

###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이 실명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5. 반신불수가 된 사람</li> <li>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ol>
2급	1억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li>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li> </ol>
3급	1억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ol>

지정후유장애구분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표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4급	1억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ol>
5급	9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li> <li>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li>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li> </ol>
6급	7,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ol>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7급	6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li> <li>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li> <li>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li> <li>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li> <li>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li> </ol>
8급	4,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li> <li>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li> <li>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li> <li>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li> <li>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li> <li>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li> </ol>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9급	3,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li> <li>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li> <li>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li> <li>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li> <li>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li> <li>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li>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li> <li>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li> <li>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li> <li>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li> <li>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li> </ol>
10급	2,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li> <li>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li> <li>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li> <li>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li> <li>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li> <li>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li> </ol>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0급	2,700만원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2급	1,900만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4급	1천만원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3.3.23.>

### 유자녀 등의 범위 (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
1. 중증 후유장애인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2. 유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가족	<p>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p> <p>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p>

#### 비고

피부양가족의 범위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4] <개정 2012.8.22.>

###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제22조제2항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만원)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15.12.2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6천원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한다.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1만원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천원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5천원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매 1일당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라.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2호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만원
마.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2호	3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 1대당 3천원
바.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제1호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 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제2호	2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통지 시기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 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부 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미체결 사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2.9.4.>

##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	소유자명	등록번호
	차 명	주행거리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사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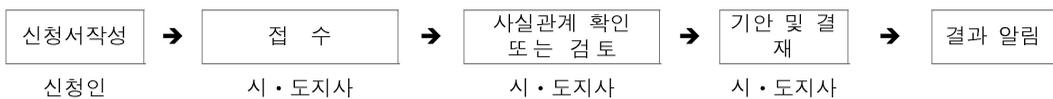
귀 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주의사항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해외체류 등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등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처리절차



210mmx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2.9.4.>

제 호 <b>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b>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	소유자명		등록번호	
	차 명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기간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 · 도지사 <span style="border: 2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40px; height: 40px;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10px;"></span> 직인</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9.4.>

<b>범칙자 적발 보고서</b>		○ ○	○ 장	○ 장
변 호 : 20- 수 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행위 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범칙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범칙 행위	일시/장소			
	위반내용(붙임: 증명자료)			
시·군·구청 또는 경찰서 (특별)사법경찰관(리)(성명)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복제할 수 없습니다.
- 동 책자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법령 및 관련규정 등 변경사항은 법제처 또는 관련 법령, 규정 소관부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 발 행 월 : 2018년 12월
  - 발 행 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발 행 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서초동)
  - 대표전화 : 1644-2000
  - 인 쇄 처 :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T. 1833-9650
-